

부산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단34038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2021. 3. 11.

판결 선고2021. 4. 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301,873원 및 그 중 3,695,720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9,606,153원에 대하여는 2020. 10. 29.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20. 6.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0. 6. 5. 접수 제597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1	2019. 1. 2.	5,000,000원	D	2019. 1. 2. ~ 2024. 1. 2.
2	2019. 1. 22.	12,000,000원	E	2019. 1. 22. ~ 2024. 1. 22.

2)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험계약에서 피고 B이 D와 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이 D와 E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20. 9. 29. D에 3,695,720원을, 2020. 10. 28. E에 9,606,153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20. 6. 4.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13,301,873원(= 3,695,720원 + 9,606,153원) 및 그 중 원고가 D에 대위변제한 3,695,72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9. 30.부터 2020. 10.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 원고가 E에 대위변제한 9,606,153원에 대해서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0. 29.부터 2020. 11.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C는 악의의 수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덕

별지